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
| 신청인(대표자) 제출 서류 | 1.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(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·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관람·전시에 관한 계획서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질병의 진단·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6.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,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| 수수료 없음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

작성방법

1.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㉓란은 적지 않습니다.
2. ㉕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,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.
3. ㉗란에는 포획·채취·방사·이식·가공·유통·보관·수출·수입·반출·반입·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